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희영 전화 031-8053-4391	보 도 자 료 2023. 1. 25.(수)

제 목	성매매 실업주 은닉, 수사기밀 유출, 뇌물수수 등 관내 경찰관의 비리 사건 수사 결과 - 경찰관 4명 기소(1명 구속)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❍ **평택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김윤정)**는 **지역 내 성매매업자, 도박사범과 유착한 경찰관들의 비리 사건**을 직접 수사하여,

- '22. 6. 29. 평택역 인근 집창촌 '쌈리' 내 성매매업소 협회장, 업주 등과 공모하여 **실제 업주를 은닉해준 경찰관**을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,
- '22. 12. 19. 도박장 '바지사장'에게 수사진행상황과 처리계획 등 **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**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하고,
- '23. 1. 20 성매매업소 협회장으로부터 **성매매업소 112 신고자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 청탁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**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죄, 공무상비밀누설죄, 범죄수익은닉및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**구속기소**하였음

1 피고인

- A○○ [39세, 당시 □□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위, 직위해제]
  B○○ [50세, 당시 □□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위, 직위해제]
  C○○ [40세, 당시 □□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위, 직위해제]
  D○○ [40세, 당시 □□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, 직위해제]
- 甲○○ [49세, 집창촌 협회장], 乙○○ [52세,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]
  丙○○ [46세, 위 업소 바지사장], 丁○○ [42세, 도박장 바지사장]

2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
[A○○, B○○의 집창촌 협회장과의 유착 사건]

- A○○, 甲○○, 乙○○ 등은 □□경찰서 강력팀에서 乙○○의 성매매영업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, A○○가 丙○○을 실제 업주로 입건해 먼저 송치하는 수법으로 乙○○에 대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계획한 후,

  - '21. 6. 26. 乙○○ 운영 업소에 甲○○의 지시를 받고 방문한 손님과 丙○○이 상호 폭행한 것처럼 112에 신고되자, 丙○○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고 A○○는 즉시 丙○○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하여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송치 **[범인도피]**

  ※ □□경찰서 강력팀은 丙○○의 입건 소식을 듣고 A○○에게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으니 송치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A○○가 이를 무시하여 사건이 송치되었고, 이에 강력팀에서 주임검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짐

- B○○는 甲○○의 부탁에 따라 ① '19. 10. 16. 甲○○의 성매매알선법위반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, ② '20. 1. 13. 쌈리 내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, ③ '20. 1. 20. 쌈리 내 업소를 112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처리 내용을 알려주고, 그 대가로 '19. 9. 28. ~ '20. 2. 19.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,000만 원 수수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**

  - B○○는 위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성매매업소 112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甲○○에게 누설 **[공무상비밀누설, 개인정보보호법위반]**

  - B○○는 위와 같이 뇌물을 교부받으면서 甲○○로 하여금 제3자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**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**

[C○○, D○○의 도박사범과의 유착 사건]

- C○○, D○○는 공모하여 '19. 7. 16. D○○가 수사 중이던 도박 사건의 수사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인 丁○○에게 알려주어 **[공무상비밀누설]**

3 주요 수사경과

[A○○, B○○의 집창촌 협회장과의 유착 사건 수사경과]

- ‘21. 7.~‘22. 5. □□경찰서, 甲○○ 등의 범인도피 사건 수사 중 A○○ 범인도피, B○○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실 확인

※ **검찰**은 영장기록 검토 중 수사기밀 유출 정황 등 발견하고 경찰에 확인 요청

- ‘22. 6. 29. A○○ 사건 송치(6. 10.), 불구속 기소
- ‘22. 9. B○○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송치, **뇌물수수 혐의 불송치**
- ‘22. 9.~‘23. 1. 검찰 직접 수사로 B○○ 뇌물수수 등 혐의 규명, 직인지 후 직구속
- ‘23. 1. 20. B○○ 구속 기소

[C○○, D○○의 도박사범과의 유착 사건 수사경과]

- ‘22. 11. 1. 검찰, 별건 조세 사건 수사 과정 중 C○○이 D○○와 논의하여 丁○○에게 **수사기밀을 유출한 사실 확인, 직인지**
- ‘22. 12. 19. C○○, D○○ 불구속 기소

※ 丁○○ 관련 도박 사건 재기하여 함께 기소

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1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수사로 경찰관의 비위사실 확인함

- **검찰**은 경찰 강력팀의 쌈리 수사 개시 후 신청된 영장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수사상황이 수사대상자에게 유출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, A○○의 범인도피 범행을 규명함

-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, **검찰의 사법통제와 경찰의 내부 자정 노력이 어우러져 협력수사**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 관련자들과 유착된 사실을 확인한 사례임

2 적극적인 검찰 직접 수사로 뇌물수수 혐의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

- **경찰**은 위 뇌물 사건에서 단순 채권·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B○○의 변소를 반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**불송치 결정**하였으나, **검찰**은 B○○이 사용하는 **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고 청탁 대상이 되었던 사건을 찾아내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**해 B○○의 뇌물 혐의를 **직인지한 후 직구속**함

- 또한 **검찰**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경찰관들이 **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시킨 사실을 확인**하여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함과 동시에, 무마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**왜곡되었던 사건의 결론을 실체에 맞게 바로잡았음**

3 지역 내 범죄자들과 유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들을 엄단함

- **검찰**은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며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**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**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정화에 기여함

- 향후에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**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**임